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 전공의의 육아·질병·입영 등 휴직 후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Ⅱ. 검토 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관계기관 의견

- 국방부와 병무청은 안 제8조의2의 전공의의 입영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의사면허 취득자를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하여 4~5년의 수련기간을 보장하고(입영유예), 전문의 면허 취득 후 의무분야 현역장교,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복무기간 3년)하는 제도임. 또한, 현행 병역법 시행령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

1)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3의2.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거나 제한연령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수련 중도에 군의관 등으로의 입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전공의의 근로권 및 복무권 보장을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라 수련과정 중 입영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므로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증가,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한 의무장교 기피 및 인기 전공과목 선택을 위한 경쟁 심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의 실질적 유인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결국 입영휴직 허용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축소와 그로 인한 수련 전문의 충원 차질, 군의료체계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군의료체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함.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10.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현 행	상임위 의결안	합의안
<신 설>	제8조의2(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질병·입영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 ----- ----- 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전문위원 박 혜 진)